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전문공보관 인권감독관 김지연

전화 031-475-4290 / 팩스 031-481-4555

보 도 자 료

2021. 1. 28.(목)

제 목	**아동 · 청소년 성착취 범행을 자행한 목사 구속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제11조 제1항)

◉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민영현)는 2008.부터 2018.까지 '음란죄 상담' 명목으로 교회에서 피고인과 함께 집단생활을 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을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여 교육적 방임한 목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등으로 구속기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하였음

Ⅰ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 A○○(52세), 안산 ○○교회 목사

❍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

- 2008.~2018. ○○교회에서 총 2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4명 및 성인 피해자 1명으로 하여금 '음란죄 상담' 명목으로 자위행위 또는 다른 여성신도와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들을 추행 또는 유사강간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준유사성행위, 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등]

- 2012.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 방임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도 학교에 보내지 않았으나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행위의 처벌규정이 2012. 8. 5. 신설되어 그 이후 범행 1건만 기소

Ⅱ 수사 경과

○ 2020. 12. 4. 경찰, 고소장 접수

○ 2021. 1. 14.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 2021. 1. 15. 사건 구속송치

○ 2021. 1. 28. 피고인 구속기소

Ⅲ 참고 사항

○ 피고인은 교회 신도들의 자녀인 피해자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교회 내에서 집단생활을 하도록 하여 사회와 철저히 격리시킴으로써 피고인을 거스를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하고, 그러한 피해자들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하고, 피고인 앞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음란죄 상담'을 받아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세뇌하여 성을 착취한 사실을 확인함

※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한 사안이므로, '준강제추행' 등으로 의율

○ 교육 및 사회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생계비를 긴급 지원하였고(향후 학자금·의료비 지급 예정), 재판 과정에서 법정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